

'06년 4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 장금영 과장, 오충종 사무관 (2110-5284)
노동부 고용정책팀 이재홍 팀장, 양연숙 사무관 (503-9748)

FTA 피해 기업 · 근로자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제도 마련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 ◇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 피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 4.18(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할 예정
- ◇ 동 법률이 시행되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로 무역조정기업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될 경우
 - 무역조정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 융자, 경영·기술상담, 경쟁력확보자금(기술개발·설비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구조조정의 쏠과정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 무역조정기업·근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신속지원팀)”를 통해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 ◇ 미국의 경우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으며,
 - 미국 TAA프로그램은 FTA 피해산업의 지원으로 생존확률, 매출, 고용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KIEP, '04.8~12)
 - * 생존률 13.1%p 상승, 매출증가율 17.7%p 증가, 고용증가율 9.5%p 증가
 - 우리나라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FTA 피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 향후 한·미 FTA 등 주요 FTA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
 - * 이를 위해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 및 무역조정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 계획
- ◇ 동 법률안은 시행령·규칙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공포후 1년이 경과한 200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참고 1. 무역조정지원법의 주요 내용 및 해외사례
 2. 질의 및 답변(FAQ)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4. 노동부 주요 고용안정사업 현황
 5.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全文

<참고1>

무역조정지원법의 주요 내용 및 해외사례

구분	주요 내용
원인	○ FTA 체결·이행에 따른 수입품 증가
지원범위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원요건(기업)	①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②동종상품의 수입증가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③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할 것 ➔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기업 : 정보 제공, 경영·기술컨설팅, 단기경영자금융자, 경쟁력확보자금(설비투자 등) 융자 ○근로자 : 고용보험법령 등을 활용하여 전직지원
무역조정지원위원회	○ 위원장 : 경제부총리 ○ 위원 : 산자·노동·예산·산업단체추천·학계전문가 등 15인 ○ 실무위원회 설치(위원장 : 산자부차관 예정)
재원조달	○ 일반회계, 기존 기금(중산기금, 고용보험기금) 활용
재정소요 추계(10년)	○ 총 2조 8,473억(기업 2조 6,400억원, 근로자 2,073억원)

국가	지원 제도
미국	○ 1962년부터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국 산업과 실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운영
EU	○ 1957년 유럽통합 이후 유럽공동체의 최우선 목표인 역내 국가·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유럽구조기금(ESF: Europe Structural Fund)을 창설하여 운영
일본	○ 국내외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활력재생법」을 통해 사업재구축·공동사업개편 등을 추진할 경우 세제·상법·금융 지원 등을 제공

<참고2>

질의 및 답변(FAQ)

Q1 지원대상인 제조업 관련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송업, 애프터서비스업 등이 대상이 될 것이며,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임.

Q2 FTA로 인한 피해만을 지원하는데 FTA로 인한 피해와 기타 피해를 어떻게 구별 가능한가?

A 특정 FTA로 인한 피해는 특정국가로 부터의 수입량의 증가를 통관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 지표의 변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정할 예정이며, 그 간 반덤핑조사 등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무역위원회에서 피해판정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Q3 어느 정도 피해를 입어야 지원신청이 가능한가?

A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심각한 피해'의 판단은 무역위원회가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이상 감소와 그 밖의 경영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하게 됨.

Q4 피해유무 외에도 자구계획의 타당성평가 등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아닌가?

A 지원요건이 엄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또한, 지나치게 지원요건을 완화할 경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이 예산부족 등으로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Q5 무역위원회, 무역조정지원위원회,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등 여러 기구가 있어 지원절차상 혼선은 없는지?

A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진공에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정신청을 하고, 컨설팅·용자 지원 등 구체적 지원도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받게 되므로 단일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Q6 지원받은 기업이 조정계획과 달리 행동하는 경우 제재할 방안은 있는지?

A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후 조정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허위로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음.

Q7 시행시점이 내년 4월부터면 너무 늦는 것은 아닌지?

A FTA에 따른 피해유무는 발효후 6개월이상 지난 후에야 판정할 수 있으므로, 한·미 FTA 등 주요 FTA가 발효되고 6개월이상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본격적인 지원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봄.

<참고3>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주요골자

- ◆ 한·칠레 FTA 및 향후 FTA에 따른 농어업등의 피해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2004.3.2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영어규모 확대, 생산기반정비, 고품질·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어업인이 희망시 폐업지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설치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법 시행후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를 설치

<참고4>

노동부 주요 고용안정사업 현황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또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실업상태의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 취업대상자 등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신규 및 재고용을 촉진

<관련 주요 고용안정사업 지원현황>

(단위 : 건, 명<연인원>, 백만원)

구분	2005년 실적				2006년 계획		
	예산	사업장	인원	지원금액	예산	목표 인원	지원금액 ('06.3월말)
고용유지 지원금	33,885	4,519	97,962	30,919	36,427	126,645	8,462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84,888	101,487	149,657	83,978	100,682	194,170	37,983

<참고5>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무역조정(貿易調整)”이라 함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기술상담, 사업전환 및 근로자 전직(轉職)·재취업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무역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 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대책
2. 무역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3. 그 밖에 무역조정 지원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종합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무역피해”라 한다) 및 무역조정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⑤종합대책의 수립방법,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조사·연구 등)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무역조정기업의 지정 등) ①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은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3호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25 이상 감소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관련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또는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관련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한한다)의 증가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3.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일 것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 서비스의 범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 지원) ①정부는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생산시설의 가동·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의 구입 자금
2. 사업전환 등의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설비투자·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
3. 그 밖에 단기 경영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의 기준·대상·규모·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업전환 등의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영·회계·

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①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무역조정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등) ①무역피해를 입은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 또는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무역조정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무역조정기업

나.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하여 해당 수입상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절차,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①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하여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인력수요·직업교육·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무역조정근로자가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상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직 또는 재취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 시책)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①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 등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2. 무역조정과 관련된 지원시책의 조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무역조정의 지원시책 관련 협조사항
 4. 그 밖에 무역조정의 지원 시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산업 또는 노동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학계전문가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④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①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산업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 및 조사 그 밖에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정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 또는 추가징수의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9조(보고) ①무역조정기업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3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아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출입·검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역조정기업의 사무소·영업소·사업장·공장·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관한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지원과 관련된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 출입·검사·질문의 시간 및 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21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기관의 장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24조(과태료) 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제20조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